

강제수사

1.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을 강제처분이라 하고,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을 강제수사라고 한다.

2. 강제수사의 종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 피의자의 구속, 압수 · 수색 · 검증,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통신제한조치, 수사상의 감정유치, 감청, 사진촬영, 기타 감정에 필요한 분석



체포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라 함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것을 말한다. 체포는 수사초기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의 전 단계처분으로서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체포의 요건

범죄혐의의 상당성

-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체포사유

-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체포의 필요성

- 소극적 요건으로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하여서는 안된다.

1) 체포의 법적 절차

- ① 검사의 체포영장의 청구
- ② 체포영장의 발부
- ③ 체포영장의 집행
- ④ 집행후의 절차
- ⑤ 체포후의 조치의 과정을 거친다



2) 실무상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

- ① 체포영장신청서작성
- ② 체포영장신청부기재
- ③ 체포영장신청(경찰)
- ④ 체포영장청구(검찰)
- ⑤ 체포영장발부(판사)
- ⑥ 체포영장제시 및 집행
- ⑦ 범죄사실 등 고지
- ⑧ 체포영장집행원부기재
- ⑨ 체포통지(24시간이내)
- ⑩ 구속영장 신청 또는 석방
(48시간 이내)



2. 긴급체포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체포의 요건

범죄의 중대성

-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체포의 필요성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긴급성

-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 긴급체포의 절차

① 긴급체포 → ②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 ③ 긴급체포서 작성 → ④ 긴급체포원부 기재 → ⑤ 긴급체포승인건의 → ⑥ 긴급체포통지 → ⑦ 구속 영장 신청 또는 석방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한 경우

. 법원에 대한 통지의무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는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할 의무



· 서류 열람 등사권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존속 . 형제자매는 검사가 법원에 통지한 통지서 및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재체포의 제한

현행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없이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고 규정



3. 현행범인 체포

현행범이란 혐의의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을 누구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

현행범인	범죄의 '실행 중' 이거나 '실행 직후' 인 자
준현행범인	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거가 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



- 체포의 요건

1) 범죄의 명백성

피체포자가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이어야 한다

2) 체포의 필요성

체포사유가 있어야 한다

3) 비례성

현행범 체포의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



– 현행범인 체포절차

1)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였을 경우

① 범죄사실 등 고지 → ② 현행범인체포서 작성 → ③ 현행범인 체포원부 기재 → ④ 체포통지 → ⑤ 구속영장 신청 또는 석방의 절차

2)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경우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현행범인 인도 → ② 범죄사실 등 고지 → ③ 현행범인인수서작성 → ④ 현행범인 체포원부 기재 → ⑤ 체포통지 → ⑥ 구속영장 신청 또는 석방의 절차



4. 피의자의 구속

1) 피의자 구속이란?

수사기관이 사전에 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체포된 피의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 구속의 요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속사유가 있어야 한다.

- 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 경미범죄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3) 구속의 절차

(1) 사전 구속영장

㉠ 구속영장신청서 및 신청부 작성 → ㉡ 영장신청, 36시간 이내
→ ㉢ 영장청구, 48시간 이내 → ㉣ 구인장 발부 → ㉤ 영장실질심
사 → ㉥ 영장발부 → ㉦ 영장제시 및 집행 → ㉧ 구속영장 집행원
부 기재 → ㉨ 구속통지, 24시간 이내



(2) 사후 구속영장

㉠ 구속영장신청서 및 신청부 기재 → ㉡ 영장신청, 36시간 이내
→ ㉢ 영장청구, 48시간 이내 → ㉣ 구속영장실질검사 → ㉤ 영장
발부 → ㉥ 영장제시 및 집행 → ㉦ 범죄사실 등 고지 → ㉧ 구속영
장 집행원부 기재 → ㉨ 구속통지, 24시간 이내



- 구속영장의 신청 및 청구절차

사범경찰관이 신청 → 검사의 청구 → 법원의 발부 → 집행

- 구속영장 청구시 첨부서류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



-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청구된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

형사소송법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 → 의무적 > 다음날까지 심문

- 미체포 피의자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

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방법과 절차

㉠ 피의자의 출석

심문기일지 통지는 적당한 방법으로 신속히

㉡ 심문의 방법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국선변호인 선정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



- 구속영장 집행 및 집행 후의 절차

- 피의사실 등의 고지

상대방에게 구속영장을 제시

① 범죄사실 등 고지 → ② 구속의 이유 → ③ 변호인선임권 및

변명할 기회를 준 후 → ④ 구속

- 구속의 통지

형사소송법 : 지체없이

범죄수사규칙 : 24시간이내



- 송치 및 구속기간

- 체포 또는 구속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사권 종결

- 검사 : 피의자의 인치권 받은 때에는 10일내에 공소제기 ,

아니면 석방

- 구속기간 연장 : 10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1차 허용



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요건	1) 범죄혐의의 상당성 2) 체포사유 - (1) 출석 불응 또는 출석 불응 우려, (2) 경미범죄 특칙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체포구속절차	1) 체포영장의 제시 2) 체포이유 등 고지 3) 긴급진행
체포구속 후 절차	1) 체포의 통지 2) 48시간 내 구속 영장 청구 3) 피의자 석방(검사지휘필요)

체포

연행범체포

요건

- 1) (준)연행범인
- 2) 범인의 명백성
- 3) 경미범죄제한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체포구속절차

- 1) 체포이유 등 고자
- 2) 연행범인 체포서 또는 인수서 작성

체포구속후

절차

- 1) 체포의 통지
- 2) 48시간 내 구속 영장 청구
- 3) 피의자 석방(검사지휘 필요치 않음)
- 4) 석방보고

기간

48시간

구속

<p>요건</p>	<p>1) 범죄혐의의 상당성 2) 주거부정 3) 도망 4)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5) 경미범죄의 제한 주거가 없는 경우</p>
<p>체포구속절차</p>	<p>1) 구속영장의 제시 2) 구속이유 등 고지 3) 긴급집행</p>
<p>체포구속후절차</p>	<p>1) 구속의 통지 2) 피의자 석방(검사의 승인) 3) 석방보고</p>
<p>기간</p>	<p>1) 경찰 10일 2) 검찰 10일 (10일내 1차 연장가능)</p>

— 재구속의 제한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1. 압수 수색의 의미

압수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며, 압류와 영치, 제출명령의 세 가지 내용으로 한다
수색	물건이나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일정한 장소에 대해서 행해지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2. 압수의 종류

압류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하여지는 경우	영장에 의한 압수
영치	유류물과 임의제출물을 점유하는 경우	임의제출
제출명령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처분(법원)	



3. 압수 수색의 요건



4. 압수 수색의 절차



5. 압수·수색의 제한

- **오체물의 압수**
- **근사상 비밀**
- **공무상 비밀**
- **업무상 비밀**
- **야간집행제한**
- **공용, 군용항공기 등에서의 책임자의 참여**
- **주택주 등의 참여**
- **여자의 신체수색**



6.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수색

-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
-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긴급체포 된 자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 범행 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7. 압수물의 처리

- 자청보관의 원칙
- 위탁보관과 폐기처분
- 대가보관
- 환부와 가환부

- 환부 : 압수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압수의 효력을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고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하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처분
- 가환부 : 압수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피압수자나 피해자에게 잠정적으로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b. 수사상의 검증

검증이란 사람, 물건의 성질, 형상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1) 신체검사

- 절차 :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관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여자



2) 체내 신체검사

- 체내강제수색(구강, 항문 내 수색)
- 강제채뇨. 강제채혈
- 연하물의 강제배출



7.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요청

1) 통신제한조치 : 범 죄 를 계획,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는 그 범 죄 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수집이 어려운 때에 한하여 최후방법으로 검열과 감청을 실시하는 것

2) 종류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 및 전기통신의 감청으로 이루어진다



3)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

① 범죄혐의

통신제한조치는 제한대상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② 보충성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통신제한조치 허가절차

① 신청. 청구. 발부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5) 통지

① 통지시기

. 사법경찰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 검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날로부터 30일 이내

② 통지유예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유예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내에 통지



6) 긴급통신제한조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 있고, 범인의 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인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긴급감청

㉠ 검사지휘

㉡ 긴급감청 집행

② 사후허가. 사후통보



③ 집행대장 기재 및 통보

㉠ 집행대장 기재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집행 대장에 기재하고 3년 동안 비치하고, 긴급감청서 등의 표지사본을 3년 동안 보존

㉡ 통보

공소제기, 공소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



7)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

① 요건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필요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절차

㉠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의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 부장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의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㉔ 기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함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

㉕ 긴급통신제한조치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제한 조치를 긴급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장관(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통신 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8)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절차

- 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
- ② 관련 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
- ③ 연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8. 수사상 감정유치

감정유치라 함은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처분

1) 감정유치의 대상

피의자를 대상

2) 감정유치의 요건

감정유치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정신 또는 신체의 감정을 위하여 계속적인 유치와 관찰이 필요한 때에 인정



3) 청구권자

청구권자는 검사

4) 집행

경찰서장이 집행한다

5) 해제

감정의 완료 또는 유치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해제

6) 구속집행정지

감정유치기간은 구속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 유치기간은 구속으로 간주한다.



9. 기타

1) 증거보전의 청구

수사상의 증거보전이라 함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며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판사가 미리 증거조사 또는 증인신문을 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는 것

2) 청구권자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1) 증인신문의 청구

증인신문의 청구라 함은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제 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진술증거의 수집과 보전을 위한 대인적 강제처분

2) 청구권자

검사뿐만 아니라 피의자, 피고인도 청구권자로 하고 있음.

